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의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19
----------	-------

발의연월일 : 2026. 9. 7.

발 의 자 : 임의자 · 강승규 · 조지연
박수민 · 이종욱 · 강명구
안철수 · 서천호 · 이인선
이달희 · 서일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용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이 양잠·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축산시설, 창고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등 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감면,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농어촌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자경농민의 유입과 농어민의 경영 안정이 필요한 상황임으로, 세제 지원이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세부담 가중으로 영농 인구 유입과 농어촌 정착·경영 안정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경농민의 농지 등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촌 정착 지원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4조제3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u>2026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 ----- ----- ----- ----- ----- <u>2029년 12월 31일</u>-----. ----- ----- ----- -----.

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u>2026년 12월 31일까지</u> 면 제한다. ④ · ⑤ (생략)	----- ----- ----- ----<u>2029년 12월 31일</u>----- -----. ④ · ⑤ (현행과 같음)
--	---